

## 제 3 장 임 원

제 10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 인
2. 이 사 5 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 사 1 인

제 11 조(임원의선임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월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 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3 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 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 14 조(상임이사) ①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②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

제 15 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
②재임을 할 수 있으며 그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6 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7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 
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